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8일 00시 48분



목차

목차	2
단란/유흥주점 신규허가	3
단란주점 신규허가	3
유흥주점 신규허가	3

일반/휴게음식점 신규신고
단란/유흥주점 신규허가
식품/제조가공업 신고

단란주점 신규허가

영업의정의	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건물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업지역 · 위락시설 ·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)
처리기간	3일
유의사항	「건축법」·「학교보건법」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이수증 · 건강진단결과서 · 수질검사시험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) ·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·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수수료	28,000원
관련서식	식품 영업허가신청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) 
시설기준	여수시청 > 분야별정보 > 의료/식품/위생 > 식품/위생 > 시설기준 안내 참조
영업허가 등의 제한	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(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)
처리절차	신고서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교부 →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
관련법규	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
문의처	식품위생과 061-659-4225

유흥주점 신규허가

영업의정의	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건물용도	위락시설
처리기간	즉시
유의사항	「건축법」·「학교보건법」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

유리시정	는 사항이 없어야 함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육이수증 ▪ 건강진단결과서 ▪ 수질검사시험성적서 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) ▪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▪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수수료	28,000원
관련서식	식품 영업허가신청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) 
시설기준	여수시청 > 분야별정보 > 의료/식품/위생 > 식품/위생 > 시설기준 안내 참조
영업허가 등의 제한	식품위생법 제38조(영업허가 등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 (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)
처리절차	신고서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교부 →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
관련법규	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
문의처	식품위생과 061-659-4225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